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책 임 자	금융위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 (02-2100-2684)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 (02-2100-2683) 허남혁 주무관 (02-2100-2687)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장 석 일 (02-3145-7700)		최창보 팀장 (02-3145-7730) 이형석 팀장 (02-3145-7731)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정 규 성 (02-3145-7290)		이현영 팀장 (02-3145-7308)	
	금감원 회계기획관리실장 김 정 흠 (02-3145-7860)		정광윤 팀장 (02-3145-7863)	

제 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2. 27일 제4차 회의에서,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에이비비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	--------------------------------------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2019.2.27. 의결)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코스모화학(주)</p> <p>결산기 :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p> <p>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p> <p>업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p>	<p>【회사】</p> <p>①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식 기재 누락 (’10.12.31. 개별 129,427백만원, ’11.12.31. 개별 153,427백만원, ’12.12.31. 개별 153,427백만원, ’13.12.31. 별도 153,427백만원, 연결 283,427백만원, ’14.12.31. 별도 18,100백만원, 연결 21,961백만원, ’15.12.31. 별도 4,608백만원, 연결 4,608백만원, ’16.12.31. 별도 21,568백만원, 연결 21,568백만원, ’17.12.31. 별도 26,788백만원, 연결 36,898백만원)</p> <p>- 회사는 차입금 등 회사의 부채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담보 설정액을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누락하였음</p> <p>② 유형자산 원가모형 평가시 장부금액 주식 미기재 (’13.12.31. 별도 60,091백만원, 연결 149,028백만원, ’14.12.31. 별도 59,987백만원, 연결 149,082백만원, ’15.12.31. 별도 52,536백만원, 연결 99,515백만원, ’16.12.31. 별도 13,119백만원, 연결 60,108백만원, ’17.12.31. 별도 11,817백만원, 연결 64,724백만원)</p> <p>- 회사는 재평가모형을 사용한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으로 평가시의 장부금액을 주식에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p> <p>③ 주요 고객정보에 대한 주식 미기재 (’13.12.31. 연결 87,959백만원, ’14.12.31. 연결 91,166백만원, ’15.12.31. 연결 81,081백만원, ’16.12.31. 연결 136,590백만원, ’17.12.31. 연결 276,567백만원)</p> <p>- 회사는 총 수익의 10% 이상을 매출한 주요 고객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과 해당 주요 고객별 매출액을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p>	<p>회 사 :</p> <p>- 과징금 129.2백만원</p> <p>- 감사인지정 2년</p> <p>※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자위법사실 통보로 갈음</p>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코스모화학(주)	<p>【감사인 및 공인회계사】</p> <p>①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10.12.31. 개별 129,427백만원, ’11.12.31. 개별 153,427백만원, ’12.12.31. 개별 153,427백만원, ’13.12.31. 별도 153,427백만원, 연결 283,427백만원, ’14.12.31. 별도 18,100백만원, 연결 21,961백만원, ’15.12.31. 별도 4,608백만원, 연결 4,608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가 유형자산 담보설정금액을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누락하였음에도,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식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② 유형자산 장부금액 주식 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13.12.31. 별도 60,091백만원, 연결 149,028백만원, ’14.12.31. 별도 59,987백만원, 연결 149,082백만원, ’15.12.31. 별도 52,536백만원, 연결 99,515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가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시의 장부금액을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사항의 완전성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③ 주요 고객정보 주식 기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3.12.31. 연결 87,959백만원, ’14.12.31. 연결 91,166백만원, ’15.12.31. 연결 81,081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가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문별 공시사항의 완전성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정일회계법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 코스모화학(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p>공인회계사 1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모화학(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p>공인회계사 2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모화학(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에이비비코리아</p> <p>결산기 :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p> <p>비상장법인</p> <p>업종 : 변압기 제조업</p>	<p>【회사】</p> <p>① 불법행위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1년 51,322백만원, ’12년 47,664백만원, ’13년 47,277백만원, ’14년 63,771백만원, ’15년 94,776백만원)</p> <p>- 자금팀장이 장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거액의 가공 외화예금 허위계상, 매출채권 과대계상, 관련 부채 누락 등을 통해 횡령사실을 은폐하였음에도</p> <p>회사는 동 횡령금액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적립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p> <p>② 파생상품(통화선도) 자산과대계상 및 부채과소계상 (’14년 7,010백만원)</p> <p>-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기본은 공정가치 평가임에도 회사는 공정가치의 적정성 대한 아무런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아</p> <p>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전체금액을 반대로 부채로 계상하고,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해야할 전체금액을 반대로 자산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과대 계상함</p>	<p>회 사 :</p> <p>- 증권발행제한 8월</p> <p>- 감사인지정 2년</p> <p>※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p>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에이비비코리아</p>	<p>【감사인 및 공인회계사】</p> <p>①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1년 51,322백만원, ‘12년 47,664백만원, ‘13년 47,277백만원, ‘14년 62,435백만원, ‘15년 78,939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의 자금팀장이 장기간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가공예금을 계상하여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미수금 및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p> <p>은행조회서 검토, 내부통제테스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p>② 매출채권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4년 1,336백만원, ‘15년 15,837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의 자금팀장이 매출채권 임의매각, 기회수된 매출채권의 불법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매출채권이 과대계상되거나 불법행위미지급금이 과소계상되었음에도</p> <p>은행조회서상 매각 매출채권명세와 회사의 매각채권명세서 등을 비교·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③ 파생상품(통화선도계약) 관련 감사절차 소홀 (‘14년 7,010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가 통화선도계약 전체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해야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부채로 인식해야할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파생상품자산이 과대계상되고 파생상품부채가 과소계상되었으나,</p> <p>공정가치 평가검증 누락, 계약내용 검토소홀, 은행평가서상 유의사항 간과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④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14년 감사조서 일부)</p> <p>- 감사인은 舊 외감법 제14조의2(감사조서) 제2항에 따라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p> <p>회사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감사조서 중 일부(감사위험평가조서, 내부통제테스트 조서 전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p>	<p>한영회계법인 :</p> <p>-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p> <p>- (주)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p> <p>공인회계사 : 2인</p> <p>- (주)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p> <p>-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p> <p>- 직무연수 6시간</p> <p>공인회계사 : 3인</p> <p>- (주)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p> <p>- 직무연수 4시간</p>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인덕회계법인	<p>①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2013회계연도의 연결감사조서를 분실하여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음 <p>② 연결대상 PEF의 비지배지분 분류관련 감사절차 소홀 ('13년 50,22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OOOOOO PEF의 비지배지분을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p>③ 이연법인세 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13년 9,59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p>인덕회계법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파이오링크</p> <p>결산기 :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p> <p>코스닥상장법인</p> <p>업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p>	<p>【회사】</p> <p>① 인도전 매출 선인식(원청결제조건 제외) (‘10년 3,551백만원, ‘11년 △2,097백만원, ‘12년 2,226백만원, ‘13년 6,433백만원, ‘14년 △1,505백만원)</p> <p>- 회사는 제품인도 이전에 매출처인 총판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매출을 선인식 하였음</p> <p>② 원청결제조건에 대한 매출 선인식 (‘10년 51백만원, ‘11년 131백만원, ‘12년 193백만원, ‘13년 533백만원, ‘14년 292백만원)</p> <p>- 매출처인 총판이 최종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후 회사에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조건 (원청결제조건)의 경우</p> <p>회사는 총판이 최종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그 이전인 회사가 총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을 선인식하였음</p> <p>③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미계상 (‘10년 220백만원, ‘11년 197백만원, ‘12년 137백만원, ‘13년 520백만원, ‘14년 539백만원)</p> <p>-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미계상하였음</p>	<p>회 사 :</p> <p>- 과징금 209.1백만원</p> <p>- 감사인지정 1년</p>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휴빅셀</p> <p>결산기 : 2016.12.31. 2017.12.31.</p> <p>코넥스시장 상장법인</p> <p>업종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p>	<p>【회사】</p> <p>① 수익인식 오류로 인한 당기손익 과대·과소계상 ('16년 1,434백만원, '17년 △958백만원)</p> <p>- 회사는 '16년말 종속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탁중인 장기 미판매 제품을 종속회사가 인수하여 회사의 매출로 일시에 회계처리하였으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등의 수익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수익인식시기를 변경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잘못 인식하여 당기손익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p> <p>② 특수관계자 주식 공시 누락 ('16년 1,123백만원)</p> <p>- 회사는 특수관계자(종속회사)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주식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p>	<p>회 사 :</p> <p>- 과징금 2.2백만원</p> <p>- 감사인지정 2년</p>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휴백셀</p>	<p>【감사인 및 공인회계사】</p> <p>① 수익인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1,434백만원, ’17년 △95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매출인식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p>② 특수관계자 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1,12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주식의 완전성 검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p>정동회계법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주)휴백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p>공인회계사 : 1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휴백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p>공인회계사 : 2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휴백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